

의안번호	제 39 호
의 결 연 월 일	2018년 월 일 (제 회)

2019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8년 10월 2일

2019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 39 호

제출연월일 : 2018년 10월2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응급실 환자분류소, 음압격리병실 등 감염관리 시설 부족으로 내원 환자 및 보호자의 안전이 위협에 노출되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으로, 적절한 진료와 감염병 질환 예방 등 도민의 건강 증진에 힘쓰기 위하여 청주의료원 응급실 및 중환자실을 증축하려는 것이며,
-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써 노인인구 및 암환자 증가에 따른 호스피스, 재활의료서비스 제공과 병상 가동률 96.8%로 입원환자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하고, 감염병 적정관리를 위하여 청주의료원 병상 및 응급실 증축을 하려는 것이며,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바이오 세라믹기업에 우수한 생산시설 제공 및 기술지원을 위한 “융합바이오 세라믹테크노베이터”를 우리 도 오송 바이오폴리지구(오송 2단지)내에 건립하고자 우리도와 청주시가 공동 부담하여 건립 부지를 한국산업 단지공단으로부터 취득하고,
- 충북도립대학은 재학생 대비 학생생활관의 규모와 수용률이 타도립대 최하 수준이며, 4인1실 체제 및 동 건물 내 남녀학생 공동 학숙 등 낙후한 기존생활관의 학숙 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으로, 열악한 학습 여건, 통학불편 해소로 대·내외적 대학 경쟁력 확보와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 학생생활관을 추가 건립하려는 것이며,
- 매년 감소되는 산림면적과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 대형화, 산림병해충 피해증가, 물 부족심화로 인한 산림 자원의 중요성 증대 등 시대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위하여 도내 사유지 임야 매입 등 도유림 확대가 필요하며,

- 서충주 신도시 내 대단위 산업단지와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전체 인구는 약 2만명으로 집계, 유동인구 합산 4만명으로 추산, 현 관할 주덕119안전센터의 소방력으로는 소방활동 대응 범위를 초과한 상태로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는 서충주119안전센터 신축을 하려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청주의료원 응급실 및 중환자실 증축》

-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 사업기간 : 2019. 1. ~ 2020. 12. (2년)
- 사업규모 : 연면적 증축 573.63㎡, 개보수 1,015.62㎡
- 사 업 비 : 3,800,000천원 (국비 50%, 도비 50%)

《충주의료원 병동 및 응급실 증축》

- 위 치 : 충북 충주시 안림로 239-50
- 사업기간 : 2019. ~ 2020. (2년)
- 사업규모 : 3,235.8㎡(병동 3,080㎡, 응급실 155.8㎡)
- 사 업 비 : 6,30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 부지 매입》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리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 제한2-1 블록
- 사업기간 : 2019. 1. ~ 2019. 3. (3월)
- 매입규모 : 토지 16,500㎡
- 사 업 비 : 4,878,060천원(도와 청주시 각 2,439,030천원)

《충북도립대학 학생생활관 건립》

- 위 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40번지의 2필지
- 사업기간 : 2019. ~ 2022. (4년)
- 신축규모 : 연면적 13,223㎡(지하 1층, 지상 4층) / 500명 수용
- 사 업 비 : 43,000,000천원(도비 100%)

《도유림 사유토지 매입》

- 위 치 : 도내 일원
- 사업기간 : 2019. ~ 2022. (4년).
- 매입규모 : 5,000,000㎡
- 사 업 비 : 12,000,000천원 / 연 3,000,000천원 (도비 100%)

《서충주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 위 치 :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 538
- 사업기간 : 2019.
- 부지면적 : 1,870㎡ / 부지 충주시 무상사용
- 신축규모 : 연면적 1,000㎡(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 사 업 비 : 2,443,809천원 (도비 100%)

3.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1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2건	5,016,500	16,878,060				
	건물	4건	18,031	55,543,809				
	기타							
1	토지							
	건물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573	3,800,000	2020	청주의료원 증축		
	기타							
2	토지							
	건물	충주시 안림로 239-50	3,235	6,300,000	2020	충주의료원 증축		
	기타							
3	토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리 "오송바이오폴리스 지구(오송2단지)" 제한2-1	16,500	4,878,060	2019	한국세라믹기술원 융합바이오세라믹 테크노베이터 건립	한국산업단지공단(65%), 충북개발공사(35%)	매입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40번지외 2필지	13,223	43,000,000	2022	충북도립대학 학생생활관 신축		
	기타							
5	토지	도내 일원	5,000,000	12,000,000	2019-2022	도유림 조성		
	건물							
	기타							
6	토지							
	건물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 538	1,000	2,443,809	2019	서충주119 안전센터 신축		
	기타							

관계 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p> <p>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